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29 사기
피 고 인 서복석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김△△(기소), 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가△ 담당변호사 박△△
판 결 선 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박△△을 통하여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피해자 박□□에게 “6,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마이너스 대출 상환을 한 후, 1,000만 원을 더하여 7,000만 원을 재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2. 7.경 경기 고양시 ○○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내일까지 돈을 다시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박△△에게 빌려준 6,000만 원을 박△△이 제대로 갚지 않아 전전긍긍하던 중 박△△이 소개한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든 돈을 받아낼 생각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박△△에 대한 위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그 이후로는 돈을 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시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경 피고인의 처 김○○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2매를 건네받아 함께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박△△으로부터 돈을 변제받고자 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6,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피해자가 박△△의 동업자로서 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짐작했을 뿐이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7.경 피고인의 배우자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송금 명의인이 피해자였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주거지 앞에서 박△△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2매를 받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당일 박△△에게 건넨 것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박△△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든 박△△을 통해서든 피해자를 거래의 상대방으로 인식하여 그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어야 할 것이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2018. 2. 7. 피해자 명의로 4,000만 원이 송금되기 전 피해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박△△의 일부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박△△의 진술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변동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 쉽게 믿기 어렵다. 오히려 박△△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000만 원을 자신이 빌려서 피해자에게 빌려주려고 했다’거나 ‘피고인도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1권 41쪽, 2권 126쪽).

2) 피고인이 2018. 2. 7. 저녁 박△△으로부터 자기앞수표 2,000만 원을 받으면서 ‘내일 7,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할 때 피해자도 동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처음 만난 것으로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대화한 적이 없고,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건넨 사람은 물론 ‘다음날 1,000만 원을 더해서 7,000만 원을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본 사람도 박△△이며, 피고인은 당시 누구에게 7,00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인지 지목한 적이 없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의 일부 진술기재).

3) 박△△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5,7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이행을 독촉받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6,000만 원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인 2018. 2. 8. 박△△에게 정산금이라면서 280만 원을 지급하였고, 박△△은 곧 같은 액

수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으나 그 명목은 알려주지 않았다[피해자는 박△△과 다른 사업을 하면서 박△△을 위하여 대납한 것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2권 131쪽)]. 이후 박△△은 다시 피고인에게 정산이 잘못되었다면서 150만 원의 추가 반환을 요청하였고(수사기록 2권 130~131쪽),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2018. 3. 6. 박△△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박△△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대로 소비해 버렸다. 이러한 6,000만 원 수수 이후의 정황은 피고인이나 박△△이 6,000만 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금이라고 인식했을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4) 피고인이 4,000만 원 송금 명의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자기앞수표 2,000만 원을 박△△에게 건네는 것을 보았다면 6,000만 원의 실제 출연 주체가 피해자임을 알았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박△△을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하여 단지 박△△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 것이고 그 급부 과정만이 단축된 것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박△△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용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미필적 범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안○○ _____